

배포 일시	2022. 5. 27.(금)			
담당 부서 <총괄>	물류정책관실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진홍 (044-201-4016)
		담당자	사무관	정일웅 (044-201-4018)
<공동>	물류정책관실 물류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배성 (044-201-3993)
		담당자	사무관	유찬호 (044-201-3998)
<공동>	종합교통정책관실 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경현 (044-201-3364)
		담당자	사무관	박삼범 (044-201-3824)
보도일시	2022년 5월 30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30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	

1일부터 화물차·버스·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

- 리터당 50원 추가 지원, 9월까지 지급기한 연장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화물차·버스·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「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」, 「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을 개정·고시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※ 유가연동보조금 제도('22.5.1.~'22.9.30.)

- (지급 대상) 경유 사용 화물차, 버스(시내·시외·고속·마을버스), 택시
- (지급 기준) 경유가격이 기준금액(5월: 1,850원/ℓ, 6~9월: 1,750원/ℓ) 초과 시 초과분의 50% 지원
- (상한액) 리터당 183.21원/ℓ(='01.6월 유류세)

-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, 초과분의 50%를 화물차·버스·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,
-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·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.

□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·물류업계 (대상: 화물차 44만대, 버스 2만대, 택시 5백대)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, 5월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(1,850원→1,750원/ℓ) 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(7월→9월)하기로 결정하였다.

○ 이번 조치로 인해, 경유가격*이 2,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(=(2,000-1,850) × 50%)에서 125원(=(2,000-1,750) × 50%)으로 증가하게 되며,

-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
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
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 경유가격: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(한국석유공사 오피넷(www.opinet.co.kr) 기준)

□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“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에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·버스·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,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